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은행, 정부, 공단 등과 같은 웹사이트로 접속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중요 단말기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관리자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 ○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반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투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금융업자 등은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척」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을 적용하고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		담당 부서 디지털금융검사국 담당자 김상록 (직위, 성명) 선임조사역 연락처 02-3145-7427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 ○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거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며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투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업자 등은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을 적용하고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등)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정보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은행, 정부, 공단 등과 같은 웹사이트로 접속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중요 단말기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관리자 웹사이트에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 ○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거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투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단이유 ② 전자금융업자 등은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을 적용하고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등)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정보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금융업자 등은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을 적용하고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등)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정보